

대구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64
----------	-----

제출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관련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완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개정(안 제2조)

- 1)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를 따르도록 개정

나. 기타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 개정 및 띄어쓰기 정비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
- 2)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3. 7. 20. ~ 8. 9.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 아님
-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 5)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6)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의결

대구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위생·서비스·품질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지정 및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참조하여”를 “참조하되,”로, “목적범위”를 “목적 범위”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대구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

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시설개선”을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으로 한다.

3. 쓰레기봉투,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을 “예산의”로 한다.

제10조 중 “지정기준”을 “지정 기준”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해당 대구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2. (생략)
3. 쓰레기봉투, 음식물처리수수료 지원
4. (생략)
5. 착한가격업소의 소규모 시설 개선 보조

6. 7. (생략)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적격여부 평가 수행에 필요한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고,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기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

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대구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

-----.

1. 2. (현행과 같음)
3. 쓰레기봉투,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현행과 같음)
5. ----- 시설 개선 및 안전점검 -----

6. 7. (현행과 같음)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조사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점검 물가모니터요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활동에 따른 보수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
----- 예산의 ---

-----.

제10조(영업자의 협조) -----

----- 지
정 기준 -----

-----.

<삭 제>

관 계 법 령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별표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차.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1) 소비자보호시책 수립 2) 물가 지도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 3) 소비자 교육 4) 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운영 5)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험·검사 시설의 지정 또는 설치 6) 지방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7) 민간 소비자보호단체 육성 8) 국민저축운동의 전개	1)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2) 가격표시제 실시업소 지정·관리 3) 물가지도 단속 4) 소비자 교육 5) 소비자고발센터 등 소비자보호 전담기구의 운영·관리 6) 민간 소비자보호단체의 육성 7) 저축장려 및 주민홍보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행정안전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 2호에 해당(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경제과장 김희자